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5. 17 선고 2020가단133434 판결 [사해행위 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양진영, 김용명, 이창엽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강남 담당변호사 원범연, 류지환, 김희승

변 론 종 결 2023. 5. 10.

판 결 선 고 2023. 5. 1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① 피고와 C이 2019. 11. 23.경 <별지 목록에 나오는 연립주택>에 관하여 맺은 매매계약(이하 편의상 ‘이 사건 계약’이라고 한다)을 2,4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함과 아울러, ② 피고는 원고에게 2,4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쟁점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,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내세워, 피고와 C이 2019. 11. 23.경 맺은 이 사건 계약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,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.

나.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,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.

(1) 먼저 갑 1의 기재만으로는, 피고와 C이 이 사건 계약을 맺을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다거나 또는 적어도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과 그 당시 C이 이른바 ‘채무초과 상태’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(2) 다음으로, 원고의 C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, 이 점을 뒷받침하는 을 19-3, 19-5, 19-6, 19-8, 19-10의 각 일부 기재는 을 19-9, 19-11, 19-17의 각 일부 기재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, 갑 4~8, 을 19-1~19-17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,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.

(3) 끝으로, 을 5-1의 일부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이 사건 계약을 맺을 당시 피고가 이른바 ‘선의의 수익자’였던 사정도 인정된다.

2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.

판사 박관근

<연립주택 목록>

(1동 건물의 표시)

서울 노원구 E 외 5필지 지상 F호

[도로명 주소] 서울 노원구 G

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연립주택(10세대)

지층 183.96㎡

1층 183.96㎡

2층 205.32㎡

3층 168.98㎡

4층 141.62㎡

옥탑 25.20㎡

(전유부분 건물의 표시)

건물번호 : H

구 조 : 철근콘크리트조

면 적 : F호 76.59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토지의 표시 : 1. 서울 노원구 I 대 69㎡

2. 서울 노원구 J 대 76㎡

3. 서울 노원구 E 대 69㎡

4. 서울 노원구 K 대 73㎡

5. 서울 노원구 L 대 66㎡

6. 서울 노원구 M 대 66㎡

대지권의 종류 : 1~6.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 : 1~6. 39.93/419. -끝-

